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11. 29 선고 2017가단155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7. 11. 8.

판결 선고2017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D, E, F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, 피고 D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).

나. 피고 C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, 제194조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.

판사강성우

별지